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

2023. 8. 30.

사법행정사무회의의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목 차]

1. 개요	1
2. 재판중계의 필요성 및 논의 경과	3
가. 재판중계방송에 관한 헌법상 쟁점 및 의의	3
나. 현행 법령체계에서 재판중계방송의 허용 여부 등에 관한 검토	8
다. 재판중계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11
1) 연혁 및 계기	11
2) 주요 외국의 현황	14
3) 재판중계의 가부 및 필요성	24
라. 재판중계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결과	30
1) 경과 및 주요 활동내용 등	30
2) 재판중계연구반이 제시한 재판중계 방안 개요	31
3. 재판중계 시범실시에 관한 검토	36
가. 전면적 실시에 앞선 시범실시의 필요성	36
나. 시범실시 방안	38
1) 재판중계에 관한 시범실시안	38
2) 시범실시를 위한 사법행정적 지원방안	40
다. 시범실시를 위한 관련규정의 정비	43
1) 관련규정의 정비 필요성	43
2) 관련규정 정비 시 고려할 문제	44
3) 구체적 규정 정비 방안	48

1. 개요

- ▣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으로서 '재판중계의 필요성과 그 시범실시를 위한 쟁점 사항 및 관련 규정 등 개정'에 관하여 검토



▣ 재판중계의 필요성 및 논의 경과

- 재판중계방송은 헌법상 공개재판 원칙의 실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으나,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당사자의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기본권 충돌 문제가 발생 가능함
- 대립하는 여러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재판중계방송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재판중계방송의 허용요건, 중계방송의 주제·방법·절차,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계대상 사건 유형의 선정, 적절한 촬영 및 중계방식 등 기준의 정립이 필요함
- 현행 법원조직법 제59조 등에 따라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재판중계방송이 가능하나, 재판중계에 관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의 해석상 하급심 재판중계방송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실정임
- 2022. 7.부터 2023. 2.까지 활동한 재판중계연구반은 최종보고서에서 재판장의 재량에 근거한 법원 주도 재판중계방송을 제안하면서, 재판중계에 적합한 사건 유형, 중계방송의 방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재판중계를 위한 촬영 등 지침(안)」을 제시함

▣ 재판중계 시범실시에 관한 검토

- 재판중계 허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거, 사법부 내의 공감대 형성 정도, 일반 국민의 시각, 재판받는 당사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판중계의 부분적 허용이 타당하며, 재판중계 시범실시를 통하여 내부 점검 및 중계 대상·범위의 점진적 확대를 고려함이 바람직함
- 재판중계연구반 최종보고서의 제안을 바탕으로, 재판중계방송을 위한 TFT 구성 및 운영, 법관 일반을 대상으로 한 재판중계 시범실시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하여 2년간 10건 내외의 재판중계 시범실시를 제안함
- 시범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규칙의



제정 또는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제안하는 한편, 재판중계 시범실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효력을 미치는 법규 사항(법원공무원의 면책규정이나 국민에 대한 특정 행위의 금지규정 등)을 포함하여 법률 차원의 규정 정비방안을 검토함

- 시범실시 시 재판장의 재량에 근거한 법원 주도의 재판중계방송을 기본으로 하여 재판중계에 적합한 사건 유형, 중계의 방법과 범위, 기술적 방식, 당사자의 신청권 및 불복 허용 여부 등 쟁점의 구체화를 도모함

2. 재판중계의 필요성 및 논의 경과

가. 재판중계방송에 관한 헌법상 쟁점 및 의의

▣ 헌법상 공개재판 원칙의 실현 형태로서 재판중계방송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개재판의 원칙 또는 공개주의 원칙이란 일반 국민에게 법원의 재판과정, 즉 재판 기일에 법원이 행하는 심리와 재판에 관한 방청을 허용하거나 방청의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말로 법원의 재판은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법정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¹⁾
- 재판중계 역시 공개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임
 - 누구든지 재판의 일시·장소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정보가능성의 보장), 재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정에 출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법정 출입의 보장), 위 두 가지만을 보장하는 원칙을 직접 공개주의

1) 한동섭·정문식·김형일,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위한 재판방송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연구용역보고서), 법원행정처 (2012), 15.



라고 함²⁾

- 국민의 알 권리가 인정되는 공익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그 심리와 재판 결과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 즉 언론 보도에 의한 전파가능성 보장까지 그 내용으로 포섭할 수 있는데, 이를 간접 공개주의라고 함³⁾
- 방송과 공개는 전혀 다른 개념이나, 방송이 공개의 한 방법으로서 공개를 일종의 상위개념으로 본다는 전제 하에, 재판 방송 논의와 관련하여 재판 방송을 재판의 ‘간접 공개’로 평가하고 있는 견해들이 다수 존재⁴⁾

- 재판의 공개 목적을 밀실재판의 폐해, 즉 재판당사자들에게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만 보는 것에서 나아가 재판의 공개 및 중계를 통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사법의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것까지도 그 목적으로 본다면, 재판중계 방송은 공간의 제약이나 방청자 수의 한계가 거의 없는 최대 공개로서 그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임⁵⁾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바라본 재판중계방송

- 알 권리의 보장은 민주주의의 한 내용으로서 국가의 정치과정을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사법부 역시 국가의 한 구성부분이며,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도 공무원으로서 헌법 제7조 제1항⁶⁾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사법작용은 당연히 알 권리의 대상이 됨⁷⁾

2) 김재윤, “독일과 한국의 공개주의와 그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공개주의의 확대로서 TV공개주의에 관한 최근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1호 (2004), 300. 특히 위 논문 312면에 의하면, 간접 공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할 때 TV공개주의가 중요한 공개방식으로 언급되는데, TV공개주의는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TV보도(광의의 TV공개주의) 이외에 TV카메라에 의한 영상과 음향의 기술적 녹화의 허용 및 이에 대한 동시 또는 녹화중계(협의의 TV공개주의)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함.

3) 김태형, “재판 방송의 가능성, 한계 및 구현방안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17), 164.

4) 김태형, 위의 논문, 10; 염호준·표현덕·서용성,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사법정책연구원 (2018), 22; 한동섭·정문식·김형일, 앞의 보고서, 74 등. 이와 달리 ‘직접공개’ 또는 ‘간접공개’의 분류에 포섭하기 보다는 ‘비대면 공개’, ‘방문 없는 공개’ 등 새로운 유형의 공개형태로 볼 수도 있을 것임.

5) 노재선, “대법원에서의 변론 생중계에 관한 소고”,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2014), 142.

6)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과거 법정의 물리적 수용인원의 한계는 공개재판 원칙의 내재적 한계 사유로 이해되어 왔으나, 정보통신기술과 방송기술의 발달 등으로 실질적 의미의 재판공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갈수록 증대되고, 재판중계방송의 확대 요청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주요 정치인이나 경제인 사건 등에서 방청 수요가 법정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재판장이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한 후 추첨을 거쳐 그 소지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방청을 허용함에 따라 방청권 획득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사례는 이미 드물지 않음

▣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측면에서 살펴보는 재판중계방송

-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법부의 가장 본질적 역할인 재판과정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임⁸⁾
- 국민이 재판과정을 지켜볼 때 사법제도를 더 신뢰하게 되고, 실제 재판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재판중계방송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됨⁹⁾
- 재판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법관은 가능한 한 명확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을 이끌어 나가고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국민이 사법절차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됨¹⁰⁾
- 재판과정이 중계될 경우 시민에 의한 감시나 비판을 의식하여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절차 참여자가 소송사건에 대한 준비와 심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사

7) 강동욱,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심포지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2017. 1. 20. 발표), 22.

8) 한동섭·정문식·김형일, 앞의 보고서, 237.

9) Shelly Rosenfeld, “Will Camera in the Courtroom Lead to More Law and Order? A Case for Broadcast Access to Judicial Proceedings”, American University Criminal Law Brief Vol. 6, 18-19 (2011), <https://digitalcommons.wcl.american.edu/cgi/viewcontent.cgi?article=1050&context=clb> (2023. 6. 20. 확인).

10) 정선주, “민사소송절차에서 공개재판의 원칙과 비밀보호”, 서강법학연구 2권 (2000), 171.



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음¹¹⁾

▣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관점

- 최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등장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확대됨
 -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기술과 능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 침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생활 보호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또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보호가 요구되고 있음¹²⁾
- 재판중계방송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¹³⁾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음
 - 소송당사자나 증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들의 모습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고,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오늘날과 같이 정보디지탈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 공개는 정보기본권의 보호와도 맞물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¹⁴⁾
 - 설령 소송당사자가 공개 자체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침해 상황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경우에 따라서 소송당사자가 여론에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자신의 기본권침해 상황을 수용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임¹⁵⁾
 -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중계 과정에서 피고인은 물론, 가족 등 주변인의

11) 염호준·표현덕·서용성, 앞의 보고서, 210.

12) 여기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함. 강동욱, “사생활보호의 관점에서 본 형사재판중계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4호 (2017), 127.

13) 중계방송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경우에는 어차피 재판절차라는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사생활의 일부 공개는 감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함[김태형, “재판에 대한 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저스티스 통권 제130호 (2012), 157].

14) 김소연, “재판중계의 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제28권 제3호 (2016. 9.), 259.

15) 정문식, “재판방송의 헌법적 문제와 가능성 - 재판방송의 헌법적 정당성과 허용방안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1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58.



사적 생활관계가 노출되면서 심각한 사생활침해가 초래될 수 있으며, 심지어 범행을 저지른 죄인으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도 적지 않고, 디지털정보의 특성상 피고인 등 소송참여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더욱 광범위하고 강력해질 수 있음¹⁶⁾

- 이처럼 재판중계방송으로 인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음
- 따라서 재판중계방송의 허용은 대립하는 여러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알 권리의 보장이 훨씬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사생활침해 및 사법목적의 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임¹⁷⁾
 -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오히려 당사자의 기본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이 된다면, 법원은 재판의 비공개에 대한 결정을 고려해야 할 것임¹⁸⁾
 - 한편 재판의 공개나 중계방송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에 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이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판시함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표현내용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16) 강동욱, 앞의 논문, 134, 135.

17) 염호준·표현덕·서용성, 앞의 보고서, 48.

18) 김소연, 앞의 논문, 256.



- 재판중계방송의 허용요건, 나아가 중계방송의 주제 및 중계방송방법이나 절차 등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둬으로써, 재판중계방송으로 인한 재판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와 사법의 공정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판중계가 될 경우 법관이 사건의 실체보다는 절차적 측면에 집중하게 되고,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여론을 의식한 재판을 하게 되면 사법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으며 법관이 중계를 의식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법관의 직권적 개입을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의 요청에 반할 우려도 있음¹⁹⁾
- 재판의 방송으로 인하여 증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전국적으로 노출되는 결과, 증인들은 카메라가 설치된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꺼려 할 것이고, 예민한 증인의 경우 증언하고 싶어도 증언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재판 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어 결국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음²⁰⁾

▣ 위와 같은 헌법적 쟁점들을 고려하여 재판중계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정립 필요

- 재판 과정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재판중계방송으로 인한 사생활 내지 개인정보 침해, 초상권 침해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건 유형, 적절한 촬영 또는 중계방식 등 기준 정립 필요
- 구체적 기준을 정립할 경우 재판장이 재판중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등 심적 부담 없이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임

나. 현행 법령체계에서 재판중계방송의 허용 여부 등에 관한 검토

▣ 법원조직법 제59조 등에 따라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재판중계방송 가능

- 법원조직법 제59조

19) 강동욱, “국민의 알 권리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중계의 허용에 관한 법정정책적 검토”, 『世界憲法研究』(제23권 제1호), 114.

20) 김태형, “재판 방송의 가능성, 한계 및 구현방안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208.



-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녹화, 촬영 외에 중계방송을 재판장의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계방송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유형, 재판 절차 내지 시기 등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법원조직법 제59조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다면 중계방송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이미 재판중계방송을 재판 공개의 한 형태로 예정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음

법원조직법 제59조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 후문 및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4 제2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 후문에 따른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영상재판의 인터넷 중계를 공개 방법에 포함
-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도 영상재판을 방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법률 심의 당시 국회 논의 반영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 ①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4(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 ② 법 제287조의2제2항에 따른 변론기일을 법정에서 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심리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의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정 등 법원 청사 내 공개된 장소에서의 중계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터넷 중계

■ 재판중계에 관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같은 문단 내



에서 '규칙'이라 한다.)」의 이원적 규율

- 규칙은 ① 제4조에서 신청 및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이하 같은 문단 내에서 '촬영등행위'라 한다)과, ② 제6조에서 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는 중계방송의 포함 여부와 대상 절차, 요건 등을 달리함
 - ① 먼저 규칙 제4조에 의한 촬영등행위에는 중계방송이 포함되지만, ② 규칙 제6조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은 소속 법원 내 시설 또는 원격지 법원 내 시설로의 중계를 가리키고 중계방송은 포함되지 않음
 - ① 규칙 제4조에 의한 촬영등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하도록 하여 공판이나 변론절차 자체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② 규칙 제6조 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음
 - ① 규칙 제4조에 의한 촬영등행위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인(원·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원·피고)의 동의 없이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② 규칙 제6조에서는 피고인이나 원고 또는 피고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다만 재판장이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촬영등의 제한)

- ① 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 ① 재판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1.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 (이하 생략)

제6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 ①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명할 수 있다.

1. 소송관계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외의 수용인원보다 현저히 많아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으로부터 원격지에 거주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계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보장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 녹화물 또는 촬영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설에서 중계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법원 내의 시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원격지 법원 내의 시설

- 위 규칙 내용에 의하면, 하급심 재판중계방송은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의 선고 시에 한하여 가능하고 공판 또는 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하급심 재판중계방송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실정

다. 재판중계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1) 연혁 및 계기

■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에 대하여 법원 안팎에서 재판중계방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사법부,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였음

- 2013년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및 선고를 지연중계방송의 형태로 송출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개변론 동영상]

동영상

· 대법원의 허가 없이 공개변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 특별채용 사건 공개변론 동영상
날짜	2020-06-30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대법원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산재유족 특별채용조항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공개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상중계되는 오늘이 변론이 국민 여러분께서 공청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법원의 재판과정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당사자의 출석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상고인, 원고 측에서는 어느 분 출석하셨습니까?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원고 소송대리인들
김상은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김차곤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 06. 17. (수) 아래 사건의 공개변론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공개변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상환)
[재정시간 : 2시간 45분 8초]

-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하 문맥에 따라 ‘규칙’이라



약칭한다)을 정비

- 2014. 8. 6. 규칙 제6조를 신설하여 2014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세월호」 사건 공판을 유족들이 쉽게 방청할 수 있도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생중계한 바 있음
- 2017. 8. 4. 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재판장이 판결 선고 시에도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중계방송의 범위를 확대
- 헌법재판소에서는 모든 변론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녹화 중계방송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론사를 통하여 생중계방송 하였음

선고동영상

2023. 07. 20.



사 건 2021헌라2 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청구인 서울특별시 중구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이 사건은, 피청구인의 2021. 1. 14.자 2021년 상반기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예산 감액 처분이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2021. 1. 14.에 있었고, 청구인은 같은 날 위 처분을 통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 날 위 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된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60일이 도과한 2021. 6.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1헌라2	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023. 7. 20.	각하
2	2017헌마1376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등 위헌확인	2023. 7. 20.	기각
3	2019헌마34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7. 20.	기각
4	2019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7. 20.	인용(취소)

2020년 이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영상재판 확대

- 2020. 6. 1.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영상재판 근거 마련
 - 재판장등이 기일 외에서 당사자와 제7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70조 제5항)



- 재판장등이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 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제70조 제6항 신설)
- 2021. 8. 17.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상재판의 범위 대폭 확대
- 개정 민사소송법(2021. 8. 17. 일부개정 되어 2021. 11. 18. 시행된 법률 제18396 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존 민사소송규칙에서 영상재판이 인정되던 변론준비기일을 포함하여, 변론 기일 및 심문기일에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²¹⁾
 -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도록 함(제287조의2 제1항)
 -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변론 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287조의2 제2항)
 - 감정인신문에서만 허용되던 인터넷 화상장치를 증인신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327조의2 제1항)
 - 개정 민사소송법은 2021. 11. 18.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됨(부칙 제2조)
- 개정 형사소송법(2021. 8. 17. 일부개정 되어 2021. 11. 18. 시행된 법률 제18398 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피고인에 대한 구속 이유 등의 고지절차,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영상재판 실시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구속이유 등의 고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제72조의2 제2항)

21) 한편,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영상재판 실시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설되었던 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6항은 2021. 10. 29. 일부개정되어 2021. 11. 18. 시행된 규칙 제 3001호로 삭제됨



-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제266조의17 제1항)

- 증인 등에 대한 영상신문 범위를 확대함

- ❑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함(제165조의2 제2항)

-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1. 11. 18.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됨(부칙 제2조)

2) 주요 외국의 현황

■ 해외 재판중계방송 현황 요약

재판중계방송 유형	해당 사례
원칙적 허용	미국 각 주(州)법원, 영국 대법원, 프랑스 헌법재판소, 중국, 국제형사재판소, 구 유고국제형사재판소
부분적 허용	영국 하급심 법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특정 사건에만 예외적 허용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원칙적 금지	미국 연방법원, 독일 각급법원, 프랑스 법원, 일본

- 대체로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되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재판중계방송에 관하여 과거보다 진전된 관점에서 재판중계방송의 확대를 검토하는 경향성이 나타남

■ 미국

-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수정헌법 제1조²²⁾와 모든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22) Amendment I



공정한 배심에 의해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6조²³⁾를 조화시키는 차원에서 재판중계방송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실험이 전개되어 옴

- 원칙적으로 미국은 재판을 사적인 영역에 포섭시키지 않고, 재판기록을 Public Record로서 대중에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문화
 - 재판 절차는 재판 당사자 스스로 사생활의 비밀 등을 포기하며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는 유기적 과정이기 때문에 재판 방송에 있어 재판 당사자의 인격적인 권리 등(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주로 재판 방송이 증인이나 배심원의 임무에 영향을 주어 재판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만 문제됨²⁴⁾
 - 특히 증인이나 배심원에 대해서도 재판 방송이 그들의 인격적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의 문제보다는 그들이 재판 방송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초점
- TV가 보편적인 언론매체로 자리 잡아 감에 따라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많은 주 법원에서 법정 내 카메라 사용을 시험 운영하거나 재판에 대한 방송을 허용하기 시작함
- 현재 워싱턴 D.C.를 제외한 미국 50개 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재판중계방송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23) Amendment VI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and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se(모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은 죄를 범한 주와 특별구의 공평한 배심원단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이 경우 특별구는 법에 의하여 미리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의 성질과 이유를 통보 받을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대면할 권리,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할 강제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방어를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24) 김태형, “재판 방송의 가능성, 한계 및 구현방안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128.



을 허용하고 있음

- 대부분의 주에서는 재판 방송 허용 여부를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정비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978년 이후 재판중계방송이 허용되어 왔고, 1995년 O. J. Simpson 사건 이후 재판중계방송의 문제점이 부각되며 주지사가 재판중계방송의 금지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계속하여 1심과 항소심을 구별하지 않고 재판장 재량으로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하고 있음
- 뉴욕주의 경우 1987~1988년에 걸쳐 1심 및 항소심 법원의 재판중계방송이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는데, 1997년 시범 프로그램 종료 후 프로그램이 갱신되지 않아 1심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은 금지되고 항소심에 대한 중계방송만 허용되고 있음
- 연방법원은 여전히 재판중계방송에 대하여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연방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의 연구나 각종 시범 프로그램(Pilot Program)의 실시 등을 통해 재판 과정을 촬영하여 녹화된 영상을 게시하거나, 일부 재판에 대한 라디오 생중계를 실시하는 등 재판중계방송에 관한 검토를 이어나가고 있음
- 연방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는 1991년부터 3년간 2개의 연방항소법원과 6개의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0여 개의 민사소송절차를 녹음, 녹화, 방송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음
- 연방대법원에 카메라 접근을 허용하는 취지의 이른바 ‘Sunshine 법안’들이 연방 상원에 제출되는 등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하라는 의회의 압력이 계속되자 연방사법회의(Judicial Conference for the United States)는 2010년 9월 법정내 카메라 설치에 관한 시범 프로그램을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
- 연방사법회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일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YouTube 채널을 통한 오디오 스트리밍 생중계를 허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음
- 연방대법원도 2020년 5월경부터 연방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오디오 스트리



밍 생중계를 하고 있으며, 과거 생중계를 실시한 변론들의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동일 홈페이지에서 오디오 및 녹취록으로 제공하고 있음

- 여러 법원이 재판 촬영·중계 등에 관한 지침을 개별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재판중계 화면 구성은 법원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제9연방항소법원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된 화면을 통해 법관과 대리인을 클로즈업해 송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제9연방항소법원의 고정 화면 예시 ①]



[제9연방항소법원의 고정 화면 예시 ②]



-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경우 역시 대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된 화면 구성을 보여주되, 화면의 촬영 범위가 보다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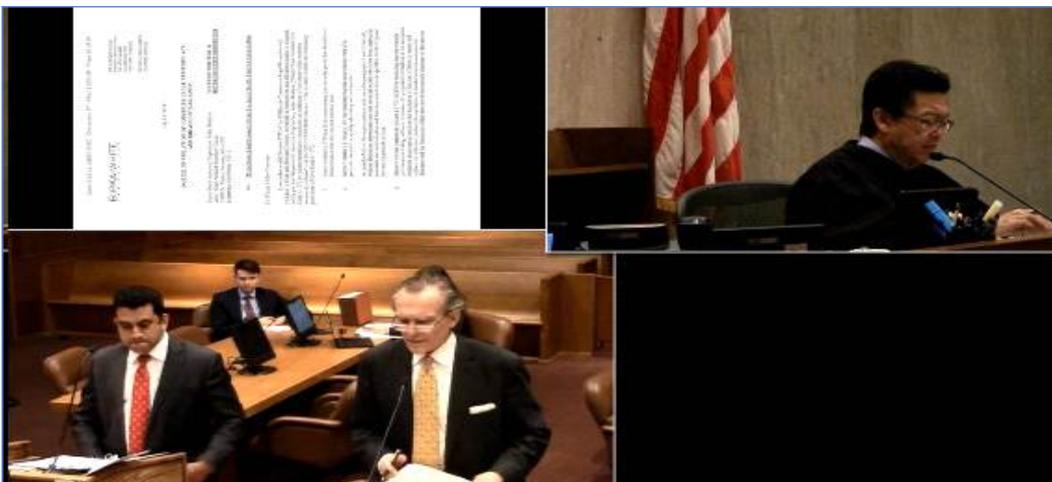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고정 화면 예시 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고정 화면 예시 ②]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고정 화면 예시 ③]





- 반면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의 경우 발언자에 따라 법관과 대리인을 전환하며 보여주는 구성을 취하고 있음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의 전환 화면 예시]



▣ 영국

- 스코틀랜드 법원은 1992년부터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용하고 있음
-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정에서는 본래 법률에 따라 재판중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최근 그 제한이 완화되는 추세
-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정에서는 TV카메라는 물론 캠코더나 녹음기 등의 법정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으나,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는 2012년 법원의 업무에 대한 공중의 이해 및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목적으로 ‘항소심 재판(형사 및 민사)’에서의 ‘변론 및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중계를 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형사법원(Crown Court)’²⁵⁾의 ‘판결(양형) 선고’까지 순차적으로 재판중계를 확대할 계획임을 공표²⁶⁾
- 2013년 법률 개정으로 카메라의 반입을 허용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판결 선고 절차를 촬영할 수 있게 되었고(Crime and Courts Act 2013), 2013. 10.부터 형사재판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을 항소심(Court of Appeal)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뒤 영국 법무부는 사법절차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

25) 형사사건 중 Trial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식 형사법정으로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Magistrate Court와 구분됨

26) “Proposals to allow the broadcasting, filming, and recording of selected court proceedings” by Ministry of Justice, published 10 May 2012(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17307/broadcasting-filming-recording-courts.pdf, 2023. 8. 8. 확인)

- 영국 대법원은 헌법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 제47조에 근거하여 2009. 10. 1. 설립 당시부터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하고 있음

[영국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중계영상]²⁹⁾



▣ 캐나다

- 재판중계방송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었으나, 캐나다 대법원은 기술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1981년부터 1993년까지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하지 않다가 1993년 법정 내 카메라 촬영을 허용하였음

29) 영국 대법원의 경우 주로 발언자를 클로즈업하는 화면을 사용하되, 대리인의 등 뒤에서 재판부 전체를 촬영하는 화면도 섞어서 사용하고 있음



- 재판중계방송을 담당하는 CPAC(Cable Public Affairs Channel, 의회 절차의 방송도 담당)가 특정 사건에 대한 방송을 신청하면 대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재판 촬영 중 필요한 모든 제한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짐
- 2009. 2. 10.부터는 공개 금지 또는 사생활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에 대한 웹캐스팅까지 인정하고 있음

[캐나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실시간 재판 중계 안내 및 실제 실시간 중계영상]³⁰⁾

Hearings

Today



Hearing in progress
Webcast: live

Hearing in progress
Starting time 9:30 a.m.: [Cindy Dickson v. Vuntut Gwitchin First Nation \(Yukon Territory\) \(Civil\) \(By Leave\) 39856](#)
Webcast: [live](#)

[Scheduled Hearings](#)
[Archived Webcasts](#)

Webcast of the Hearing on 2023-02-07

39856
Cindy Dickson v. Vuntut Gwitchin First Nation
(Yukon Territory) (Civil) (By Leave)

Related Links
[Accessibility](#)
[Restrictions](#)
[Change Format and/or Language](#)



00:51

Change Webcast Format and/or Language
 Video Audio only
 English French Floor

■ 독일

- 녹음이나 촬영을 통한 재판중계방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종래 독일 법원조직법(Gerichtsverfassungsgesetz, GVG) 제169조 제1항은 재판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제1문), 라디오방송 녹음, TV방송 녹화, 그리고 공개적인 방송 또는 그 내용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음성녹음과 영상녹화를 금지하고 있었음(제2문)
- 다만, 위와 같은 포괄적이고 엄격한 금지규정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 시민들의 요구

30) 캐나다 대법원의 경우 주로 발언자에 따라 법관과 대리인을 전환하며 보여주는 구성을 취하고 있음



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16년 개정안이 발의되어 제한적 범위에서 재판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되었음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BVerfGG) 제17a조는 변론 시 법원이 재판관계인의 출석을 확인할 때까지 또는 재판의 공개 선고 시 TV와 라디오방송 등이 허용된다고 하여 앞서 본 법원조직법과는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

-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행정재판과 사법재판에서 재판의 녹음 및 녹화를 금지하되, 재판의 역사적 기록물 구성을 위한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절차의 녹음 및 녹화를 인정하고 있으나, 재판중계방송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프랑스에서도 재판중계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재판의 녹음·녹화 및 배포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sur l’Enregistrement et la Diffusion des Débats Judiciaires)’는 2005년 2월 사전 허가를 전제로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하는 형태가 실용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았음

■ 일본

- 형사사건의 경우, 1949년 개정된 형사소송규칙 제215조에서 “법정에서의 사진촬영, 녹음 또는 방송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고, 1952. 1. 개최된 형사 재판관 회동에서 협의된 ‘법정질서유지에 관한 방침’은 “법정에서의 사진 촬영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개정 전에만 이를 허가할 것, 이 경우에 신병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수갑이나 포승을 풀고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유의할 것(제16항)” 및 “라디오, 신문 등 보도기관의 법정에서의 녹음 또는 방송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것(제17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민사사건의 경우, 구 민사소송규칙(1996년 일본 최고재판소규칙 제5호로 폐지된 것) 제11조는 “법정에서 사진촬영, 속기, 녹음 또는 방송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지 않음



면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1996년 개정된 민사소송규칙 제77조 역시 “법정에 있어서의 사진촬영, 속기, 녹음 또는 방송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재판중계방송이 허가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임³¹⁾

3) 재판중계의 거부 및 필요성

▣ 재판중계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 대립

● 재판중계 불가론

- 대중들의 흥미를 자극할 목적의 무분별한 편집·보도로 인한 정보 왜곡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사법부 신뢰 저하 우려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 등 재판당사자의 기본권 침해 우려
- 재판에 참여하는 법관, 검사 및 변호인/대리인과 방청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 (또는 특정 법관, 검사, 변호인/대리인 등에 대한 보복 내지 ‘마녀사냥’ 우려)
- 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 우려(증인의 증언 거부 가능성, 재판중계로 인하여 경직되거나 오해 소지 질문을 피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소극적일 가능성)
- 일부 법관, 검사, 변호인 등이 유명세를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행동을 할 가능성

● 재판중계 허용론

- 재판절차 방송으로 인한 오보 감소로 사법시스템 신뢰 제고에 도움, 즉 법정 내 카메라 인입은 오히려 재판 공정성을 고양시킬 것이라고 함
- 재판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³²⁾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대한 승복률은 높아질 것이고, 일반 대중 역시 재판이 늘 카메라의 감시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31) 김태형, “재판 방송의 가능성, 한계 및 구현방안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123, 124.

32) 재판당사자들 역시 완전히 공개된 재판진행에 관하여 절차적 만족감으로 느낄 것이고 그 결과 판결에 대한 승복률은 높아질 것이며, 일반 대중들 역시 재판이 늘 카메라의 감시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인하여 사법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Mickey H. Osterreicher, “The Long Road to the New Federal Experiment”, Reynolds Court & Media Law Journal Vol. 1, Issue 3(Summer, 2011), p. 237



인하여 사법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므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제고에 도움

- 재판은 어차피 공개된 이벤트이고, 재판중계는 양적 관람객 증대에 불과(질적으로 상이한 공개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관점)
-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사법시스템에 관한 교육적 효과 기대
- 판사, 검사, 변호인/대리인의 직무수행 성실도 제고 기대
-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상식에 어긋나는 주장, 위증 주저)

■ 사법부 구성원의 시각

- 2017년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응답자 1,013명, 응답률 34.39%)는 아래와 같이 재판중계방송에 관하여 법관들의 관점이 대단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제1·2심 주요사건의 재판 과정 전부·일부에 대한 중계방송을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67.82%(전부 중계방송 허용 15.30%, 일부 중계방송 허용 52.52%), 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32.08%
 - 판결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을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전면적 또는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73.35%(판결 선고 전부 허용 36.43%, 판결 선고 제한 허용 36.92%)
 - 최종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을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28.04%,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35.83%, 최종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34.55%
 - 재판중계방송의 허용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재판장의 재량에만 맡기기보다는 사전에 규칙으로 어느 정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68.71%, 사전에 규칙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25.96%
- 2023. 5.말~2023. 6.초 (유)디지털 산업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용역단'이라 함)가



실시한 재판중계 활성화 및 법원방송시스템 구축에 관한 설문조사³³⁾ 역시 아래와 같이 재판중계방송에 관하여 사법부 구성원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 사법부 구성원들의 67.3%는 재판방청만으로 재판공개 원칙이 충분히 구현된다고 응답하였음
 - ▣ 다만 일반직의 경우 34.7%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여 법관 중 같은 응답비중(29.5%)에 비해 약간 높았음
- 재판공개 원칙의 구현을 위해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중계하는 것에 대하여, 법관 중 긍정의견은 44.7%인 반면 일반직 중 긍정의견은 55.7%
 - ▣ 직종 세분류별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76.2%) 및 서기관 이상(77.2%)이 재판중계 확대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판단함
 - ▣ 사무관(68.8%), 고등법원 판사(56.5%), 주사 및 주사보(53.4%)는 긍정응답이 많은 반면, 서기 및 서기보(48.0%), 지방법원 부장판사(44.1%), 지방법원 판사(38.0%)의 경우 부정응답이 보다 많았음
- 나아가 재판중계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사법부 전체로는 재판중계 확대에 대한 긍정의견(38.9%)이 부정의견(33.4%)의 비중보다 근소하게 많았으나, 이 역시 직종별로 재판중계 확대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 ▣ 서기관 이상(67.7%), 고등법원 부장판사(57.1%), 사무관(52.4%), 고등법원 판사(52.2%), 주사 및 주사보(38.0%)는 재판중계 확대에 대해서 긍정의견이 부정의견보다 많음
 - ▣ 지방법원 부장판사(38.1%), 서기 및 서기보(29.5%), 지방법원 판사(26.4%)는 긍정의견이 부정의견보다 적었음

■ 일반 국민의 시각

- 재판중계방송은 사법부의 핵심 역할인 재판 과정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33) 일반국민, 법조지역, 사법부로 나누어 설문이 진행되었고, 법관, 법원공무원 등 사법부의 총 1,762명이 설문문에 응답하였음.



공개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인식

-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실질적 재판 공개에 대하여 법원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실제로 재판중계방송을 통해 법정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국민 84% “공익 큰 중대사건 재판중계방송 허용해야”(2017. 8. 31.자 연합뉴스 발췌)]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공익이 큰 중대사건은 1심이나 2심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성인 남녀 1천41명을 대상으로 21~26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공익이 큰 중대사건 재판의 중계방송에 찬성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

응답자의 67.7%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같은 인격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공인일지라도 레저나 쇼핑 등 순수한 사적 영역은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72.2%)도 매우 많았다.

[공개재판 원칙 실현 위해 '재판중계' 활성화해야(2022. 5. 23.자 법률신문 발췌)]

대한민국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이고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예외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 사건 재판이 있을 때마다 방청권 배부를 기다리는 장사진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면 과연 공개재판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작년 11월 개정 민·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비대면 영상재판의 활성화가 가능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재판중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회의보다 화상회의가 일상화된 시대가 됐다. 정보 혁명으로 시작된 디지털 혁명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었다. 재판의 중계는 오프라인 법정에서 익숙한 기성세대들로서는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 온라인이나 TV를 통해 법정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춰진다면 자칫 재판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고 법정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염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장소적 개념의 법정을 열어두는 것만으로 공개재판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 팬데믹이 끝나지 않아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수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지금이 재판중계를 통해 공개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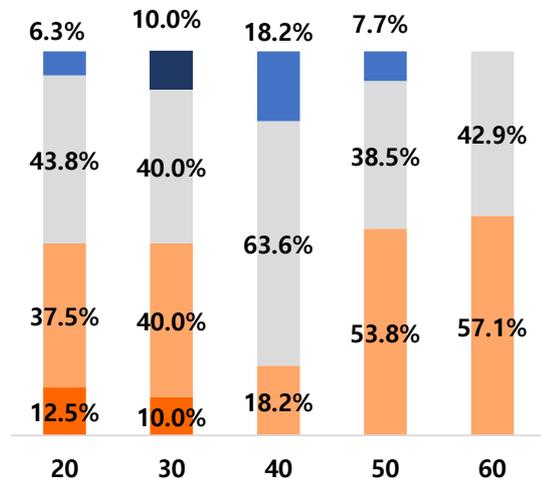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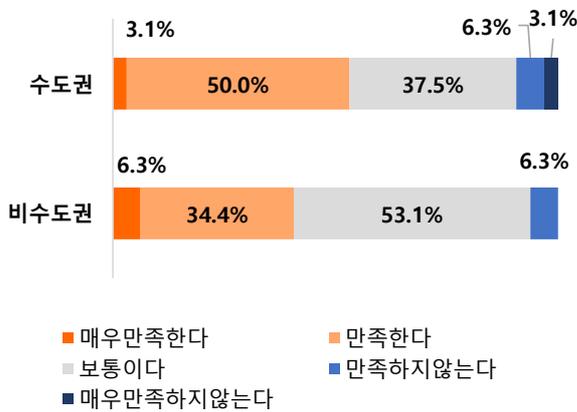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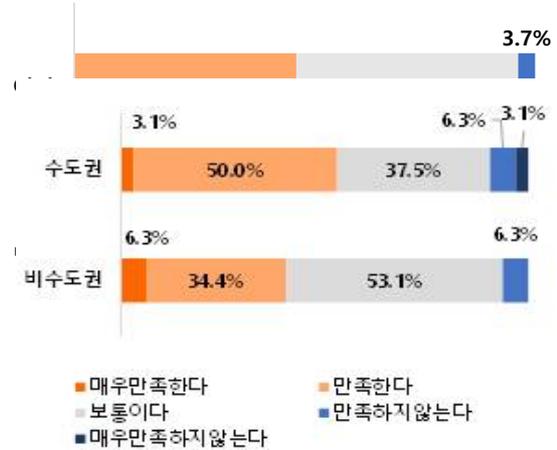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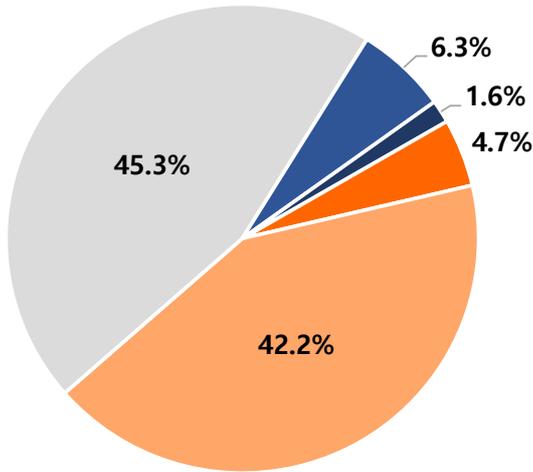
- 2023년 정책연구용역단이 실시한 재판중계 활성화 및 법원방송시스템 구축에 관한 설문조사 중 일반국민 1,09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일반국민은 대체적으로 재판중계방송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재판방청을 원하는 국민이 법원에 방문하여 방청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공개 원칙이 충족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의견은 일반국민의 61.1%
 -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거나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매체를 통해 중계하는 것’에 대한 일반국민의 긍정의견은 87.9%
- 대법원은 2013. 3. 21. 대법원 2010도14328 국외이송약취등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대하여 사상 최초로 중계방송을 실시한 이래 대법원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YouTube 대한민국 법원 채널 등을 통해 대법원 공개변론 및 선고를 중계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앞서 본 정책연구용역단의 일반국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법원이 제공하는 공개변론 및 선고의 재판중계를 시청한 일반 국민들의 경우, 성별, 지역, 연령에 상관 없이 긍정적인 시청경험(46.9%)³⁴⁾이 부정적인 시청경험(7.8%)³⁵⁾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남

34)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시청자와 ‘만족한다’고 응답한 시청자 수와 비중의 합산

35)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시청자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시청자 수와 비중의 합산



<대법원 재판중계 시청자의 만족도 현황>



● 반면, 하급심 재판의 경우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하여 중계가 가능하도록 그 시기와 대상 절차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규칙 제5조, 제6조), 공개법정에서 치열한 변론을 거쳐 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정의가 실현되는지 등 법정외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재판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필요성은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중요사건이 많은 하급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님

- 다만, 하급심 재판의 중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나 증인 등 소송관계인의 개인 정보보호 문제 등 대법원 재판과 구분되는 사실심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필요

▣ 소결론: 재판중계의 부분적 허용이 타당



- 재판중계를 통한 공개재판주의의 충실한 구현, 사법신뢰 제고의 필요성
 - 재판에 대한 방송 자체를 시작부터 끝까지(gavel to gavel)할 경우 재판방송 내용 편집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 가능
 - 법정 내 카메라로 인한 재판관계인의 심리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에서 나아가 그 심리변화로 인하여 재판관계인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대리인들의 보여주기 위한 showmanship, 증인의 증언 회피, 판·검사의 과잉행동 등)에 대한 과학적·실체적 근거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
 - 증인 및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 문제는 카메라 위치 조절, 재판장의 적절한 소송 지휘 등으로 해결 가능
 - 판사, 검사, 변호사의 모습·음성 노출 등 개인정보 공개는 감수할 부분
- 재판중계는 허용하되, 그 대상과 범위 등을 규율하는 방향을 제안
 - 이후 시행 결과를 참조하여 재판중계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실시할 경우에도 이에 관한 사법부 내·외부의 의견수렴 및 시범운영을 통한 내부 점검 필요
 - 영국 형사법원(Crown Court)의 경우, 2016. 4. 25.부터 3개월간 8개의 형사법원 판결 선고를 촬영하여 테스트를 거침(별도로 촬영물을 방송하지는 않음)

라. 재판중계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결과

1) 경과 및 주요 활동내용 등

- ▣ 총 12명(법관 11명 및 비법관 재판연구관 1명)으로 재판중계연구반을 구성하여, 2022. 7.부터 2023. 2.까지 다음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였음
 - ① 하급심 재판중계방송의 확대 필요성, 요건, 대상사건 유형화 및 구체화
 - ② 신청 및 허가에 의한 재판중계방송, 직권에 의한 재판중계방송, 불복절차 등 재



판중계방송에 관한 절차

- ③ 생중계, 녹화중계 및 지연중계 방식, 촬영 및 녹화 주체와 송출 경로 등
 - ④ 소송관계인이나 방청인 등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재판중계방송 가이드라인
 - ⑤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4 제2항에 따른 영상재판의 인터넷 중계 관련 방청인의 접속 방법 및 절차, 영상법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질서유지 방안 등
- 위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재판중계방송을 도입할 경우 그 허용범위, 절차, 방식 등을 검토하여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제안하는 한편, 실제 재판중계방송이 이루어질 경우 촬영 등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2) 재판중계연구반이 제시한 재판중계 방안 개요

■ 재판장의 재량에 근거한 법원 주도 재판중계방송

- 법원 주도의 재판중계방송 ⇨ 재판중계방송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 신문·방송 등 언론사가 재판 과정의 촬영, 영상의 송출 및 방송 과정을 주도하게 될 경우 흥미 위주의 사건 선별, 선정적·자극적 보도 및 이로 인한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편집으로 인한 재판 내용 왜곡, 대중의 관심을 고려한 재판 희화화 또는 여론재판으로 흐를 가능성 등 재판중계방송의 부작용들로 거론되는 현상들이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재판중계방송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개재판 원칙을 충실하게 구현하면서도 위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재판 과정의 촬영, 영상의 송출 및 방송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판중계방송에 관한 재판장의 재량 존중 ⇨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 구체적 타당성
 - 재판중계방송은 사법 작용의 핵심인 재판 과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을 위한 재판부의 권한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조직법 제59조 또한 녹음, 녹화, 중계방송을 재판장의 전적인 허가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재판중계방송의 실시 여부, 구체적인 진행 방식 등에 관하여는 재판장의 재량이 충분하고도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함
- 재판장의 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판, 변론절차 등 심리 과정 자체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 과정을 촬영하고 편집 및 송출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법원 주도형 재판중계방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반면, 규칙의 이원적 규율(제4조에 따른 언론사 등의 신청 및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재판장의 명에 의한 경우)을 유지하여 신문·방송사에 공판이나 변론절차 등 심리 과정 중계방송은 허용하지 않음
- 또한 피고인 등 당사자의 동의는 필수적 요건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급심 공판, 변론절차 등 심리 과정의 중계방송을 도입할 경우, 피고인 등 당사자의 기본권 제한 내지 침해 측면에서 법원 내 시설에서의 중계와 동일한 평면에서 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등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음
 - 그러나 재판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사법 신뢰를 제고한다는 재판중계방송 원래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재판중계방송 대상으로 삼는 이상, 피고인 등 당사자의 동의는 필수적 요건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
- 현행 법원조직법, 규칙은 제4조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경우와 제6조 재판장의 명에 의한 경우 모두 당사자의 불복수단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바, 재판중계방송 관련 불복수단 역시 부정함이 타당함
 - 재판중계방송을 원하지 않는 피고인 등 당사자의 불복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원칙론적인 관점에서 경청할 부분이 있으나, 재판중계방송 자체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을 인정하면, 재판중계방송의 적시성으로 인하여 불복의 당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사실상 재판 진행이 중지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 자체보다 중계방송 실시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장기화됨으로써 본말이 전도될 우려가 있음

- 피고인 등 당사자의 권리 보호는 별도의 불복 수단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재판중계방송 요건의 제한, 촬영 및 송출 과정 등에서의 적절한 개인정보 등 보호조치를 통해 고려함이 타당
- 재판중계방송을 원하지 않는 피고인 등 당사자는 재판장의 처분에 관한 이의 신청(민사소송법 제138조, 형사소송법 제304조)을 통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고, 별도의 독립한 불복수단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촬영영상 송출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자체 방송채널의 확보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법원이 재판 과정의 촬영의 주체가 되고, 촬영된 영상은 법원 홈페이지와 법원의 인터넷TV 채널 등에 의해 중계되는 방안이 바람직
- VOD 방식³⁶⁾의 녹화물의 사후계시는 재판중계방송의 시행 경과를 살펴 추후 도입 검토

■ 재판중계에 적합한 사건 유형의 제시

- 재판중계방송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 특히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건으로서 ① 해당 재판에 대한 방청 수요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외 수용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② 피고인 등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재판중계방송 대상으로 고려함이 타당함 ⇨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고려
- 방청 수요는 곧 해당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의미하는데, 많은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은 기존 법정에서의 공개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재판중계방송은 자칫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음(가령, 주요 공직자의 뇌물수수사건이라 하더라도 실제 방청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재판중계방송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어려움)

36) VOD 방식(video on demand)은 통신망 연결을 통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주는 맞춤형영상정보 서비스를 말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이나 원·피고 등 당사자가 재판중계방송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중계방송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음

● 결국 재판중계방송에 적합한 사건으로 ①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인지, 사안의 중대성과 비범성이 인정되는지 등 고려), ② ㉠ 방청수요가 법정의 수용한계를 초과하거나, ㉡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사건을 제시

● 앞서 본 공익성 등 당해 사건의 특성 외에 재판의 종류와 절차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재판중계방송이 상대적으로 적합한 절차로 국민참여재판을 고려할 수 있음

▣ 재판중계방송의 방식

● 재판중계방송 형태의 구분

- 생방송(Live Broadcasting): 실시간으로 재판의 진행과정을 방송을 통해 그대로 전달하는 것

- 지연중계방송(Delayed Broadcasting): 신속한 정보제공의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생중계방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으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중계방송하는 방식

- 녹화방송(Recorded Broadcasting): 재판이 완료된 후에 녹화된 영상을 방송하는 방식

● ‘돌발상황 대처를 위한 최소 시간의 지연중계방송’이 타당

- 기본적으로 생중계방송이 원칙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방송에 부적합한 내용이 나오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감안하면 생중계방송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오히려 신속한 정보제공의 요청에 상당 정도 부응하면서도 생중계방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지연중계방송하는 방안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음

- 지연중계방송의 시차를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가 문제되고, 특히 사후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예를 들어 모자이크 처리 등)가 필요할 경우 그로 인해 시차



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되는 증인 신문 등의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아예 화면에 나오지 않게 조치한다면 사후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필요성은 낮아질 것이므로, 법정 내 소요와 같은 돌발 상황 발생 시 중계 중단을 위한 목적에서 잠깐의 시차만 둘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규칙에서 하나의 중계방식만을 허용할 필요는 없고, 상황에 따라 재판장 재량으로 다양한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재판중계를 위한 촬영 등 지침(안)」 등의 제안

- 재판중계연구반이 제시한 규칙 개정안(별지 1]과 같음)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 언론사 등의 신청 및 재판장 허가에 의한 녹음·녹화·중계방송을 규정한 규칙 제4조 유지
 - 규칙 제4조의 경우 녹음, 녹화, 중계방송을 공판,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하도록 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유지 ⇨ 언론사 등에 공판, 변론절차 등 심리 과정 중계방송 불허용
 - 재판중계방송이 기존 규칙 제6조의 법원 내 시설에서의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과 성격을 달리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7조를 신설하여 재판중계방송 규정
 - 제6조 표제를 ‘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에서 ‘재판장의 명에 의한 법원 내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으로 변경하고, 제7조 ‘재판장의 명에 의한 법원 외 중계방송 목적 녹음·녹화·촬영’으로 신설
 - 재판중계방송에 대한 별도의 불복수단은 규정하지 않음
 - 촬영 등 지침은 규칙에 포함하지 않음
- 재판중계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로서 [별지 2]³⁷⁾의 재판중계를 위한 촬영 등 지침

37) 다만, [별지 2]의 제1항의 내용은 재판중계연구반이 제시한 매뉴얼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으나, 다음에서 검토할 ‘시범실시’를 위해 추가하였음



(안), [별지 3]의 법정 내 카메라 설치 등 내용도 제안

3. 재판중계 시범실시에 관한 검토

가. 전면적 실시에 앞선 시범실시의 필요성

▣ 사법부 내 논의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

- 사법정책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재판중계연구반(반장 및 일부 반원)의 연석회의³⁸⁾ 결과 재판중계연구반 내에서는 재판중계의 필요성과 사법신뢰 향상 방안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하여 긍정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에 비하여 분과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 소송관계인에 의한 재판중계제도의 오남용 가능성, 사법신뢰 향상 방안으로서 적합성에 관한 의문 등을 이유로 재판중계방송의 전면적 실시에 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중계 대상 사건 유형, 중계의 범위, 중계된 녹음 또는 녹화물의 보존 여부 등 구체적 쟁점에 관하여도 재판중계연구반 최종보고서와 분과위원회 논의 사이에 의견차가 존재함
 - 중계 대상 사건 유형: 재판중계연구반 최종보고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상대적으로 적합한 절차로 제시한 반면, 분과위원회에서는 형사재판 공개가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됨과 동시에 민사 또는 행정 가처분 사건이 중계에 적합한 절차로 논의됨
 - 중계의 범위: 재판중계연구반 최종보고서는 대상 사건 전체의 중계를 전제로 한 반면, 분과위원회에서는 사건의 쟁점이 확실히 드러나고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집중적으로 개진되는 최종 공판기일 또는 최종 변론기일만의 공개 가능성도 논의됨
 - 중계된 녹음 또는 녹화물의 보존 여부: 재판중계연구반 최종보고서는 일회성 중계만을 전제로 한 반면, 분과위원회에서는 녹음 또는 녹화물의 보존 필요성 및 보존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논의됨

38) 2023. 5. 22. 분과위원회 제28차 회의



- 법원행정처가 2017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25쪽) 재판중계방송에 관하여 법관들의 관점이 대단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정책연구용역단에서 2023. 5.말 ~ 2023. 6. 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재판공개 원칙의 구현을 위해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중계하는 것에 대해서 법관 응답자의 44.7%, 일반직 응답자의 55.7%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재판중계방송 확대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임
- 나아가 현시점에서 두 차례의 설문조사 외에 사법부 내 재판중계방송의 실시에 관한 일반적, 공개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정책연구용역단의 일반국민 대상 의견조사 결과 재판방청의 허용만으로 재판공개 원칙이 충분히 구현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여, 재판중계방송의 확대 요구가 점차 대두할 것으로 보임
- 정책연구용역단의 일반국민 대상 의견조사 결과 법조지역 응답자의 59.5%가 재판중계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검사(39.4%)보다 법학자(100%), 변호사(67.8%)의 긍정응답 비율이 높음³⁹⁾
- 다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 일반에 공개 대상 사건의 범위 및 국민의 알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적 영역 보호 필요성과의 균형점에 관한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할 만한 주요 외국의 사례 역시 일반적·전면적 재판중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

▣ 시범실시를 통한 재판중계 확대의 청사진 제시

- 시범실시를 통하여 재판중계 확대에 대한 사법부 내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재판중계 확대와 관련한 우려의 현실화 정도나 실제 재판중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

39) 다만 설문조사 분석 결과만으로는 응답자가 ‘응답자 자신의 재판이 재판공개·중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응답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만약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재판이 재판중계되는 것을 재판중계 활성화 차원에서 동의할 것인지’라고 질문하였을 경우 긍정응답 비율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26쪽에 인용된 재판중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응답 결과와 비교).



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그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음

- 중계에 적합한 사건 유형의 발굴, 적절한 중계 대상과 범위의 모색, 발생 가능한 기술적 문제의 인식과 대처 등이 가능함
- 재판중계연구반과의 연석회의 결과 재판중계 확대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시범실시를 희망하는 법관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시범실시의 긍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나. 시범실시 방안

1) 재판중계에 관한 시범실시안

▣ 재판장의 재량에 근거한 법원 주도의 재판중계방송

▣ 재판중계에 적합한 사건 유형의 제시

- 재판중계연구반 최종보고서는 재판중계방송에 적합한 사건으로 ‘①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의 중대성과 비범성 등 고려)로서 ② 방청수요가 법정의 수용한계를 초과하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사건’을 제시하면서 국민 참여재판을 재판중계방송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절차로 제시하고 있음
- 위에 추가하여, 분과위원회에서는 심리가 집중되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공표되는 가처분·집행정지 등 신청사건, 전문적 사안에 관한 민사사건 등이 추가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재판중계 여부에 대한 재판장의 재량을 존중하되 참고적 예시라는 전제임
 - 사회적 파장이나 관심도가 큰 민사·행정사건에서 가처분·집행정지를 위한 심문기일 또는 주요 쟁점에 관한 쌍방대리인의 최종변론 내지 선고기일
 - 공적인 인물에 대한 공공의 관심·영향력이 큰 형사사건(특히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사건)의 공판기일
 - 위와 같은 사건의 항소심 최종 집중변론 등에서도 활용 가능함
-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중계 대상 사건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중계가 적합한 사건의



예로 위와 같은 검토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을 고려함

- 시범실시 전 이미 소송이 계속되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시범중계 가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었는바, 이는 후술하듯이 시범실시를 위한 규정 정비의 범위와도 관련된 문제임
 - ① 반드시 부적합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중계 시범실시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후 새롭게 소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만을 중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 ② 시범실시 공표와 실제 시범실시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고, 항소심 사건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내 시범실시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중계 시범실시 공표 당시 계속중인 사건도 중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

■ 중계의 방법

- 재판중계연구반 논의는 영상과 음성의 동시 송출에 의한 중계를 전제로 하는바, 이는 영상 시대에 적합한 중계 방식을 선택하여 재판중계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량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 재판중계에 대한 법관 및 소송관계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구두로 이루어지는 변론 자체에 대한 집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음성만의 송출 또는 영상과 고정 자료화면의 송출에 의한 중계도 고려 가능함
- 시범실시 시 재판장의 재량에 의하여 ① 영상과 음성의 동시 송출에 의한 중계, ② 음성만의 송출에 의한 중계, ③ 영상과 자료화면의 송출에 의한 중계 중 선택할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함

■ 중계의 범위

- 재판중계연구반 논의는 제공되는 정보량의 확대를 위하여 재판 전체 중계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증인에 대한 신문 등 재판 일부에 대한 중계 제한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의 일환으로 가능함을 전제로 하였음



- 시범실시 시 재판장의 재량에 의하여 중계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여 재판 전체의 중계가 아닌 최종변론/공판기일, 판결선고기일 등 재판 일부만의 중계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판중계방송의 기술적 방식: 지연방송, 카메라 위치 등

- 송출 경로로는 CourTV, 대한민국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고려할 수 있음⁴⁰⁾
- 시범실시 단계에서도 재판중계연구반 최종보고서의 제안과 같이 ‘돌발상황 대처를 위한 최소 시간의 지연중계방송’이 적합하며, 시범실시 결과 돌발상황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지연 시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임
- 법정 내 카메라 위치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별지2]와 같이 시범실시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별지3] 재판중계연구반 최종보고서 중 ‘법정 내 카메라 설치 등에 관한 제안’을 참고하여 법정 내 카메라 설치가 가능함

▣ 신청권 및 불복의 허용 여부 등

- 재판중계연구반 최종보고서는 재판중계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권 인정 여부, 동의 여부, 별도의 불복수단 요부에 관하여 모두 소극적인 입장임
- 시범실시 단계에서는 당사자의 신청권, 동의, 불복수단 등에 관하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재판장의 소송지휘를 통하여 재판중계를 실시하되, 다만 사전에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 시범실시를 위한 사법행정적 지원방안

▣ 재판중계방송을 위한 TFI 구성·운영

- 재판중계에 관심 있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예: 2년) TFI를 구성하여 중계방송 실시 과정, 그로부터 도출된 문제점과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이 이루어지

40) 현재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의 경우 네이버TV, 페이스북 Live 등 사용빈도와 주목도가 높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송출 경로도 함께 고려 가능함. 또한 연령별로 주로 접근하는 매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고령층일수록 TV를 통한 접근이 높은 경향 등) 케이블 TV, IPTV 등 기존 송출 경로도 함께 고려 가능함.



도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 중계 실시 여부와 구체적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 각급법원 단위로 다수의 TFT를 구성하기보다는 각급 법원의 여러 법관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1개 TFT를 구성하여 각급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중계 상황과 결과가 효율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간 내 최소 10건 내외의 시범실시를 목표로 함

▣ **법관 일반을 대상으로 한 재판중계 시범실시 매뉴얼 배포**

- TFT 구성원이 아닌 법관도 시범실시 기간 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재판중계방송의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책받침⁴¹⁾ 또는 소책자 핸드북⁴²⁾ 형태로 재판중계 대상 사건의 예시, 중계 방법과 범위에 관한 사항, TFT에 참여 또는 접근할 방법, 재판중계 관련 지원에 대한 접근 방법 등을 안내함

▣ **재판중계 시범실시를 위한 로드맵(안)**

시범실시 준비	TFT 구성 및 활동 (2년 + α)			제도 수립
법원행정처	법관 · 외부자문위원 · 법원행정처 등			법원행정처
규정 정비/지원방안 마련 등	준비: 1~2월	실시: 2년	마무리: 1~2월	시범실시 종합평가 및 사후 방안 확립
	사건선정 등 세부사항 준비	시범실시 및 지원	분석 · 평가 및 제안	

- TFT 구성 전까지 준비할 사항
 - 법원행정처의 관련 규정 정비
 - 시범실시 참여 법관을 위한 법원 내부적 지원방안 마련
 - 예: 배당 감축, 재판연구원 등 해당 재판부에 대한 추가 인력 지원 등
- TFT의 구성 및 역할분담
 - 관심 있는 법관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10-15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

41) 다만 기왕의 책받침처럼 플라스틱(비닐) 코팅을 하는 것은 환경에 유해하므로, 향후에는 두꺼운 재질의 종이로만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42) 법정에 들어갈 때 휴대 가능한 소책자 핸드북 형태의 '법정운영 매뉴얼' 안에 재판중계에 관한 내용을 담는 방안



- ❑ TFT 구성 시 실시팀(실제로 본인이 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재판중계를 시범실시할 법관)과 지원팀(직접 시범실시를 하지는 않더라도 시범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의 준비·지원활동을 수행할 법관 등)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음
- ❑ 실시팀의 경우 심급별(1, 2심), 사무분담별(민사, 형사, 행정, 신청) 인원 분배 필요
- 재판중계 대상 사건의 선정을 위하여 외부자문위원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수 있음

● TFT 활동

- 초기 1-2개월: 시범실시를 위한 구체적 준비
 - ❑ 실시팀: 해당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 중 재판중계에 적합한 사건을 물색
☞ 본인 담당 사건 중 적합한 사건을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재판부 계속중인 사건을 물색하여 권유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음
 - ❑ 지원팀: 재판중계 시범실시를 위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을 준비하고,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한 재판중계 시범실시 안내자료(책받침, 안내책자 등) 제작
 - ❑ TFT 전체: 재판중계에 적합한 사건 선정의 기준 수립 및 구체적 유형화, 시범실시제도 홍보 및 참여 독려 등
- 이후 2년: 재판중계 시범실시
 - ❑ 실시팀: 해당 법관의 담당사건 중 적합한 사건에 대하여 시범중계 실시
 - ❑ 지원팀: 시범중계 지원, 시범중계 과정 및 결과에 관한 자료 수집과 기록 등
- 마무리 1-2개월: 활동의 정리 및 향후 재판중계제도에 관한 제안
 - ❑ 전체 TFT 참여하에 재판중계 시범실시 결과 분석, 향후 재판중계제도의 방향 및 규정(법률 또는 규칙 등) 정비방안 제안
 - ❑ 재판중계 시범실시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반응과 평가 점검: 객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외부자문위원 참여 가능



다. 시범실시를 위한 관련규정의 정비

1) 관련규정의 정비 필요성

- 현행 규칙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촬영등의 제한)

- ① 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⁴³⁾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 ① 재판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1.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
 2. 법단 위에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촬영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등 행위는 수갑 등을 푼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5. 소년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당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 ①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명할 수 있다.
 1. 소송관계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인원보다 현저히 많아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으로부터 원격지에 거주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계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보장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 녹화물 또는 촬영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설에서 중계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법원 내의 시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원격지 법원 내의 시설

43) 규칙 제3조 제1호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촬영 등 행위'로 지칭하고 있음



-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또는 회생법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
 2. 제2항 제2호의 경우 :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 ④ 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규칙 제4조 및 제5조는 ‘신청에 의한 녹음, 녹화, 촬영, 재판중계 허가’ 관련 규정
 - 당사자(피고인 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피고)의 동의(제4조 제2항 본문) 또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제4조 제2항 단서) 허가
 -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함(제5조 제1항 제1호)
- 규칙 제6조는 ‘직권에 의한 녹음, 녹화, 촬영’ 관련 규정
 - 신청에 의한 경우와 달리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것이고, 법원 외부로의 ‘재판중계’는 포함하지 않음
- 검토 대상인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법원 외부로 송출하는 ‘재판장의 명에 의한 재판중계’ 관련 규정은 미비
- 규칙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59조44)의 반대해석상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재판중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재판장 직권으로 재판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 대한 근거규정 및 그 내용에 관한 검토 필요
- 규정의 정비와 관련하여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재판중계연구반의 규칙 개정안,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보고서에서 제안된 규칙 개정안의 비교표는 [별지 4]와 같음

2) 관련규정 정비 시 고려할 문제

- ▣ **쟁점 1: 새로 도입하는 재판중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요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

44) 법원조직법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구체적으로 재판중계연구반 개정안 제7조 제3항은 제6조 제4항만을 준용하고, 제6조 제3항(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의 사전 승인 절차)을 준용하지 않는 반면, 사법정책연구원 제안에서는 제6조 제3항 제2호를 개정하여 재판중계의 경우에도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① 기존의 승인절차는 다른 법원/법정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시설관리권자의 관리권 행사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이고, 다른 법정이 아닌 본래의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중계의 경우 승인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입장과 ② 기존에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적극적이고 널리 재판공개를 실천하는 재판중계에 대해서 오히려 승인 절차가 없는 것은 체계적으로 불균형하므로 재판중계에 대해서도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아예 기존의 승인절차 자체를 모두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상정할 수 있음
 - 재판중계 결정 자체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요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재판장의 재량 존중, 법원 외부의 불필요한 오해 방지를 위하여 부정함이 상당함
 - 다만 한정된 설비의 효율적 이용, 다수 법원의 중계 일정 경합 시 조정 등 재판중계 실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실무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범실시 단계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재판중계 하실 인지 및 지원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인정됨
 - 관련 규정에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재판중계 시범실시 사실의 사전보고 의무를 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나아가 위와 같은 실무적 문제는 향후 재판중계제도의 본격적 도입 시에도 대처할 필요성이 여전하므로, 시범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법률 및 규칙 제·개정 시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재판중계 실시 사실의 사전보고’와 함께 각급 법원 단위에서 재판중계를 위한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중계 일정의 조율이나 (우선적) 실시 대상 사건의 선정 등을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음
- **쟁점 2: 재판중계에 수반되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영업비밀 공개와 관련하여 면책 또는 일정한 행위의 금지를 관련 규정에 명시할 것인지 여부**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판결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



공무원은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열람·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⁴⁵⁾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소송기록의 공개와 관련하여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⁴⁶⁾
- 재판중계 시범실시의 활성화 및 시범실시에 관여한 법원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재판중계 시범실시 시에도 법원공무원의 면책규정과 재판중계를 이용한 특정 행위의 금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 분과위원회에서의 다수 견해임
- 다만 법원공무원의 면책이나 국민에 대한 특정 행위의 금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법규적 효력에 비추어 법률의 형식을 갖추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 재판중계 시범실시에 앞서 위와 같은 사항을 규정 내용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법률 차원의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므로, 결국 재판중계방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정도나 입법 환경의 추이 등을 고려하여 ① 법률 차원의 규정정비를 하는 방안과 ② 규칙 차원에서 규정정비를 하는 방안을 아울러 마련하여 시범실시를 위해 탄력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쟁점 3: 재판중계 시범실시 사실 공표 후 새로 접수되는 사건만을 재판중계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관련 규정에 명시할 것인지 여부

-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규칙 등을 개정할 때 부칙에 위와 같은 취지를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한정된 시범실시 기간에 재판중계가 효과적으로

45)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4항(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3항(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6)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4항(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5항(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중계 대상 사건의 범위를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 역시 상당한 설득력이 인정됨

- 재판중계 및 이를 위한 시범실시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시범실시 시 재판중계 대상 사건의 범위를 한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감소할 수 있음
- 효과적인 시범실시를 위하여 재판중계 대상 사건의 범위를 소 또는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현단계에서는 재판중계 시범실시 대상 사건의 지적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규칙 규정을 제시하지 않음

▣ 쟁점 4: 재판중계 시범실시 시 관련 녹화 또는 녹음물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명시할 것인지 여부

- 재판중계연구반 최종보고서는 재판중계영상의 원본 파일의 보존 등에 관하여는 다루지 않았는바, 이는 원본 파일의 보관 및 공개를 둘러싸고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연구위원의 의견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함
- 재판중계 시범실시에 관한 사법정책분과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한 원본 파일의 보존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고, 더 나아가 재판공개 범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녹화 또는 녹음물의 보존 및 계속적 공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됨⁴⁷⁾
- 시범실시 이후 원본 파일을 사실상 보존하는 데서 나아가 재판중계 녹화 또는 녹음물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명시할 경우, ①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한) 보관만을 전제로 하는 경우와 ② 녹화 또는 녹음물의 일반 공개를 예정하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의 형태와 내용을 정하여야 함⁴⁸⁾

47) 한편 헌법재판소는 홈페이지의 '선고·변론사건 > 변론사건 > 변론동영상' 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2023. 7. 27. 기준 총 21건의 공개변론 동영상에 게시됨

48)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 등에 관하여 법원조직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법원조직법 제59조 참조),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헌법재판소규칙)에 다음과 같이 변론영상 등의 공개 관련 규정을 두고 모든 변론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녹화 중계방송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제1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심판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9조의2(변론영상 등의 공개) 헌법재판소는 변론 및 선고에 대한 녹음·녹화의 결과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2017. 5. 30. 신설]



- 재판중계 시범실시 시 원본 파일의 보존 및 계속적 공개 여부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업무부담의 가중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되, 법원 안팎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문제임
- 현단계에서 위의 쟁점에 관하여 미리 방향을 정해두고 규정 정비안에 반영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 재판중계 시범실시 시에는 재판중계영상 등 원본 파일의 사실상 보존에 그치되, 시범실시기간 종료 후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원본 파일의 보존의무, 계속적 공개의무 등에 관한 법원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구체적 규정 정비 방안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효력을 미치는 법규 사항에 관하여는 법률 차원의 규정 정비가 필요함

- 재판중계 시범실시와 관련한 법원공무원의 면책 및 국민에 대한 특정 행위의 금지는 시범중계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이는 입법적 정비의 대상임
- 한정된 기간에 재판중계 시범실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시범실시 사실 공표 전 이미 소나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도 재판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판중계 시범실시에 관한 법률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계속중인 사건의 시범중계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① 법률 차원의 규정 정비를 통한 재판중계 시범실시를 우선순위로 하되, 법률의 제정·개정을 통한 입법적 정비가 여의치 않을 때를 대비하여 ② 규칙 차원의 규정 정비를 통한 재판중계 시범실시를 차순위로 제안함
- 단, 시범실시 단계에서는 시범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시범실시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법률 및 규칙 제·개정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9조의3(변론 또는 선고의 방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다. [2021. 9. 14. 신설]



▣ [1안] 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재판중계 시범실시

- 특별법 제정 또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재판중계 시범실시의 목적: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헌법 제 109조에 규정된 재판 공개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중계방송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
- 관련 공무원의 면책: 다음의 예시적 내용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3항에 준하는 조항을 마련함

<면책규정의 예시>

법원조직법 제59조에 의하여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한 법원공무원은 그 행위가 재판장의 지휘·감독을 준수한 것인 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녹화, 촬영,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허가한 재판장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 재판중계로 지득한 내용 또는 자료와 관련된 특정 행위의 금지: 다음의 예시적 내용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5항에 준하는 조항을 마련함

<금지규정의 예시>

방송통신매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재판중계방송을 청취하거나 녹화 또는 녹음한 재판중계방송의 파일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 그밖에 시범중계의 구체적 대상, 절차, 방법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도록 함

▣ [2안] 규칙의 제·개정을 통한 재판중계 시범실시

- [2-1안] 재판중계 시범실시용 대법원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⁴⁹⁾ [별지 5] 참조

49) 이 경우 현행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목적 규정, 재판중계연구반의 규칙 개정안 제7조의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함
- [2-2안] 현행 규칙에 재판중계 시범실시를 위한 규정(제7조 신설)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방안  [별지 6] 참조
 - 시범실시용임을 명시하여 재판중계연구반의 규칙 개정안 제7조의 내용을 추가
 - 부칙에 시범실시 관련 규정의 효력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조항’을 두는 것을 전제로 기재하였으나, 일몰조항을 두지 않은 채 적정한 기간의 시범실시를 거친 이후 규칙을 재개정할 수도 있음
- 위의 [2-1안], [2-2안] 모두 제정 또는 추가되는 규정의 내용은 재판중계연구반 개정안 제7조와 대동소이하나, 사법정책분과위원회에서는 형식의 간명함,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영향의 최소화 등을 이유로 [2-1안]을 지지하는 견해가 다수임
- 한편, [1안]과 같이 법률 차원에서 관련 공무원의 면책이나 국민에 대한 특정 행위의 금지 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판중계 시범실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칙에 가급적 이에 준하는 효과를 간접적으로나마 도모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
 - 관련 공무원의 면책 관련: 규칙에 시범중계 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주의의무 규정을 두는 방안, 관련 공무원의 주의사항을 규칙에 상세히 명시하여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규칙상 주의사항을 준수하였음을 항변 사유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안됨
 - 국민에 대한 특정 행위의 금지 관련: 대법원 홈페이지의 공개변론 동영상 게시판⁵⁰⁾에는 “대법원의 허가 없이 공개변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가 게시되어 있는바, 시범중계 시에도 중계 화면에 이와 유사한 포괄적인 안내 또는 경고문구⁵¹⁾를 표시하고 관련 위법행위의 규율은 일반 민사 또는 형

50) 대법원 > 재판 > 공개 변론 > 동영상



사범에 맡기는 방안이 있음. 끝.

☞ 첨부: [별지1] 내지 [별지6]

51) 헌법재판소는 변론동영상 게시와 관련하여 법령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지규정을 두지 않고 홈페이지의 변론동영상 게시관에 다음과 같은 안내를 게시하고 있음

- * 게재 목적: 변론을 방청하지 못한 일반인들의 개별적 시청을 위한 것입니다.
- * 이용 조건: 허가 없이 선고·변론 동영상을 복사(캡처)·재가공 하거나 배포·송신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 * 불법행위 책임: 상기 이용조건을 위반한 행위자는 민사상·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 재판 중에 거론되는 증인·참고인 등의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부분은 음소거 등으로 처리되어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1]

재판중계연구반의 규칙 개정 최종안

현행	개정안
<p>제6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p> <p>①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명할 수 있다.</p> <p>1. 소송관계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인원보다 현저히 많아 법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2.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으로부터 원격지에 거주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계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보장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 녹화물 또는 촬영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설에서 중계하도록 할 수 있다.</p> <p>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법원 내의 시설</p> <p>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원격지 법원 내의 시설</p> <p>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사</p>	<p>제6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법원 내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p> <p>①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 제2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또는 회생법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p> <p>2. 제2항 제2호의 경우 : 법원행정처장의 승인</p> <p>④ 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신설></p>	<p>제7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법원 외 중계방송 목적 녹음·녹화·촬영)</p> <p>①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원 외 중계방송을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방청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인 수용인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p> <p>2.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경우</p> <p>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 녹화물 또는 촬영물을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 또는 인터넷에서 중계방송 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p>



[별지 2]

재판중계를 위한 촬영 등 지침(안)

1. 이 예규는 재판장의 명에 의한 법원 외 중계방송 목적으로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의 시범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판장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법원 외 중계방송 목적 녹음·녹화·촬영)⁵²⁾에 의한 재판중계를 명한 경우, 담당 직원은 재판의 완전하고 정확한 촬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판의 위엄과 재판 참여자들의 존엄이 존중받도록 해야 한다. 촬영용 시설과 장비, 촬영행위는 재판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3. 법정 촬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재판장은 촬영용 시설과 장비, 촬영자의 법정 내 위치를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촬영용 시설과 장비, 촬영자는 방청석에 착석한 사람들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나. 재판절차 참여자들에 대하여 머리 및 어깨를 포함할 정도의 화면보다 더 근접·확대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판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재판부 전체 화면을 고정된 각도로 촬영하고, 발언하거나 발언하지 않고 있는 판사 1인을 클로즈업하여 촬영하지 않는다.
 - 라. 카메라는 법원의 재판과 재판절차 참여자들의 발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법정구조, 화면전환 과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배심원단, 방청인석 전체가 화면에 담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심원과 방청인을 클로즈업하여 촬영해서는 아니 되고, 법정 내의 어떠한 서류나 물체도 클로즈업하여 촬영하지 않는다.
 - 마. 판사들 사이, 판사와 법원직원 사이, 판사와 검사 사이, 판사와 변호사 사이, 변호사와 재판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대화나 토의 장면은 촬영하지 않는다⁵³⁾.
4. 재판중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중계방송은 판사들이 입장하면 시작하고 마지막 판사가 퇴정하는 순간 중단해야 한다.
 - 나. 재판장이 공식적으로 휴정을 선언하는 순간 방송이 중단되어야 하고, 재개정시 방송을 재개한다.
 - 다. 재판중계는 재판장의 명에 의해서 일정시간 지연중계할 수 있다.
 - 라.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위치로 중계를 중단시키거나 담당 직원에게 중단을 지시할 수 있다.

52) 규칙 제정·개정안에 관한 검토부분에서 살펴본 내용 중 [2안]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므로, [1안]에 따라 별도의 대법원 규칙을 제정할 경우 그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 있음

53) 예시) 법대 옆에서 이루어지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사이의 대화, 변호사와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대화



마. 재판장은 직권 또는 재판절차 참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 보호, 증인의 권리 보호, 법원의 위엄 보호, 절차의 순조로운 진행, 또는 그 밖에 재판장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 사건 전체 또는 일부, 개별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중계를 금지, 제한 또는 중단시킬 수 있고, 차폐시설 내 증언을 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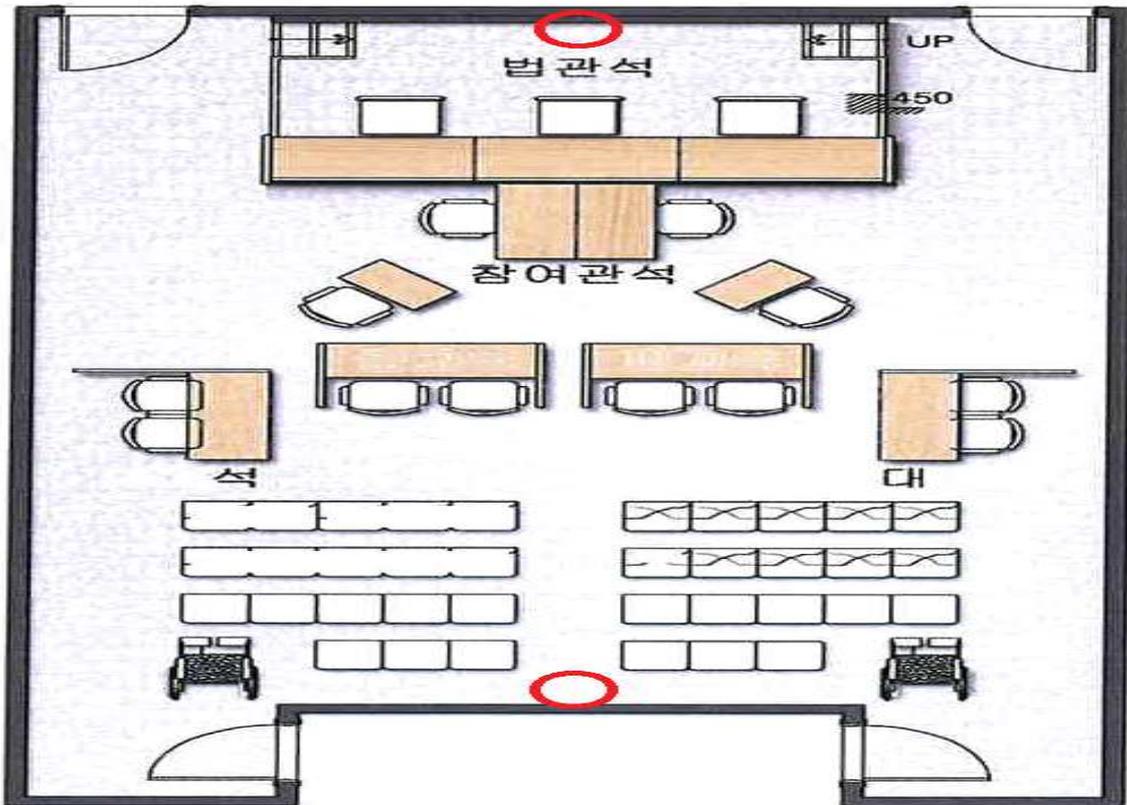
[별지 3]

법정 내 카메라 설치 등

▣ 공통사항

- 2020 개정판 법원청사설계지침서상 표준법정 평면도를 기준으로, 「재판중계를 위한 촬영 등 지침(안)」의 토론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반영함
- 동그라미로 표시된 위치의 천장 또는 벽면 상단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함
- 각 카메라는 촬영대상 인물을 모두 포함시키되 그 이외에 불필요한 촬영이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각도, 클로즈업 정도를 조절
 - 예를 들어, 민사법정에서 원·피고석을 촬영하는 카메라의 경우, 원·피고석이 모두 포함될 정도로 클로즈업 정도를 조절하되, 지나치게 넓은 화면으로 방청석을 불필요하게 촬영할 필요는 없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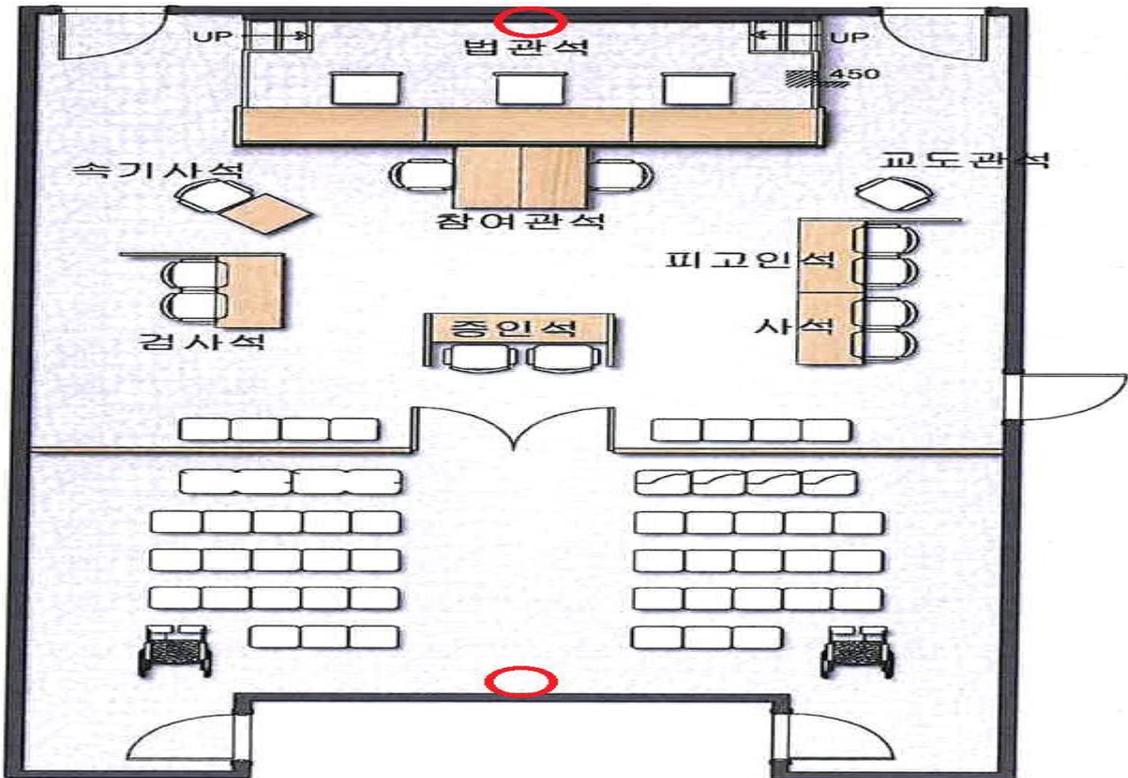
▣ 민사(행정, 가사 포함) 법정



- 법정 위쪽(법관석 뒤편)과 아래쪽(방청석 뒤편)에 카메라 각 1대씩 설치
- 법정 위쪽 카메라는 원고 및 피고석을 한꺼번에 촬영
 - 법정 상황에 따라 법정 위쪽 카메라를 1대 추가 설치(법정 위쪽에 총 2대 설치)하여 원고석과 피고석을 각 클로즈업하는 방식도 가능
- 법정 아래쪽 카메라는 법관석 전체를 촬영
 - 합의부 재판의 경우 재판부 판사 3명 전원을 촬영(다른 법정에서도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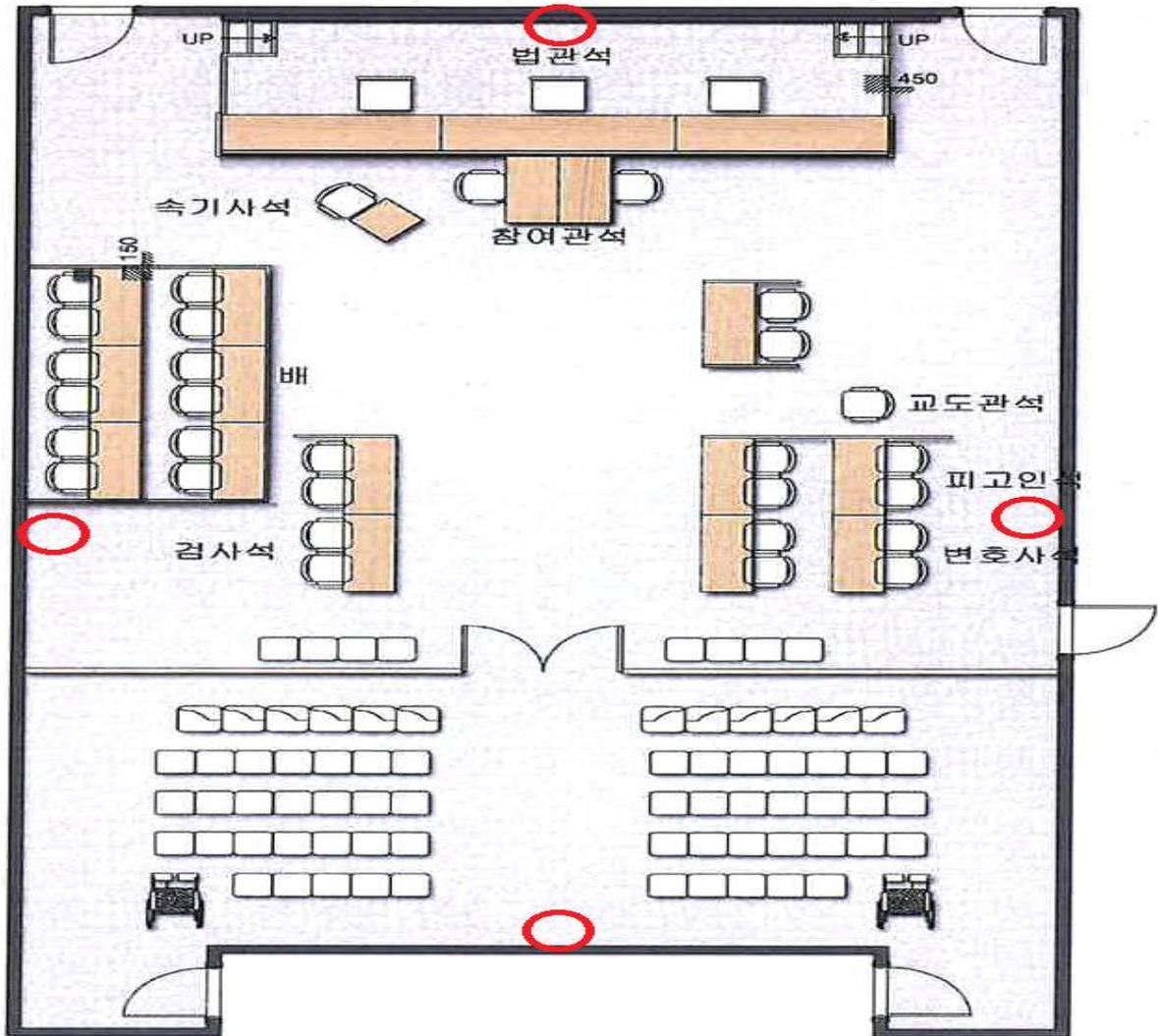
▣ 형사법정



- 법정 위쪽과 아래쪽에 카메라 각 1대씩 설치
- 법정 위쪽 카메라는 검사석, 증인석, 피고인 및 변호인석을 한꺼번에 촬영
 - 법정 상황에 따라 법정 위쪽 카메라를 2대 추가 설치(법정 위쪽에 총 3대 설치)하여, 위와 같이 한꺼번에 촬영하는 것 외에 검사석, 피고인 및 변호인석을 각각 클로즈업하는 방식도 가능
- 법정 아래쪽 카메라는 법관석 전체를 촬영



■ 국민참여법정



- 법정 상하좌우에 카메라 각 1대씩 설치
- 법정 위쪽 카메라는 검사석, 증인석, 피고인 및 변호인석을 한꺼번에 촬영
- 법정 아래쪽 카메라는 법관석 전체를 촬영
- 법정 왼쪽 카메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석을 촬영
- 법정 오른쪽 카메라는 검사석을 촬영



[별지 4]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정비에 관한 3단 조문 비교표

현행	재판중계연구반 개정안	사법정책연구원 제안
<p>제6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p> <p>①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명할 수 있다.</p> <p>1. 소송관계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인원보다 현저히 많아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2.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되는</p>	<p>제6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법원 내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p> <p>①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신설> <u>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의 정도가 매우 높아 절차의 적정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현행	재판중계연구반 개정안	사법정책연구원 제안
<p>법원으로부터 원격지에 거주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계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보장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 녹화물 또는 촬영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설에서 중계하도록 할 수 있다.</p> <p>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법원 내의 시설</p> <p>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원격지 법원 내의 시설</p> <p>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 제2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고등법원장</p>		<p>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 녹화물 또는 촬영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설 또는 매체에서 중계하도록 할 수 있다.</p> <p>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법원 내의 시설</p> <p>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원격지 법원 내의 시설</p> <p>3. <신설> 제1항 제3호의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녹음물 또는 녹화물에 대한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의 게시를 포함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현행	재판중계연구반 개정안	사법정책연구원 제안
<p>(특허법원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또는 회생법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p> <p>2. 제2항 제2호의 경우 : 법원행정처장의 승인</p> <p>④ 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2. 제2항 제2호, 제3호의 경우 : 법원행정처장의 승인</p> <p>④ 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및 그 밖에 비밀로서 가치를 지니는 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신설></p> <p>제7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법원 외 중계방송 목적 녹음·녹화·촬영)</p> <p>①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원 외 중계방송을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p>	



연 행	재판중계연구반 개정안	사법정책연구원 제안
	<p>명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방청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인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p> <p>2.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를 있는 경우</p> <p>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 녹화물 또는 촬영물을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 또는 인터넷에서 중계방송 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p>	



[별지 5]

재판중계 시범실시를 위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장의 명에 의한 법원 외 중계방송 목적으로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의 시범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방송 목적 녹음·녹화·촬영)

①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원 외 중계방송을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청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인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 녹화물 또는 촬영물을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 또는 인터넷에서 중계방송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6]

재판중계 시범실시를 위한 현행 규칙 개정(안)

제7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시범중계방송 목적 녹음·녹화·촬영)

- ① 재판장은 재판중계방송의 시범시행을 통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원 외 중계방송을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청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인 수용인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를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 녹화물 또는 촬영물을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 또는 인터넷에서 중계방송 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는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7조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